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1. 5.

제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08. 11. 6.

다. 상 정 일 자 : 2008. 11. 11.(제15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가. 제안사유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범위 확대, 지급시기 조정 및 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지역내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리 증진 도모

나.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범위 확대
 - 당 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금 또는 수당을 받는 자 제외<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변 경 :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포함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시기 변경
 - 당 초 : 분기 1회
 - 변 경 : 2월 1회(매 짹수월 25일 이내)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금액 상향 조정
 - 당 초 : 월 2만원
 - 변 경 : 월 3만원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석윤)

-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8년 10월 6일 입법예고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에 의거 제천 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다.
-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위해서 제외되는 참전유공자를 국가보훈처에 질의회신을 통하여 포함시키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질 의사항에 대한 회신 공문(보상급여과-2026(2008. 8. 28.))을 참고하시기 바람.
- 본 조례안 제2조제4호에서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자를 포함하여 참전유공자 지급대상자를 확대하였는데 이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의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에 따른 것임.
- 조례안 제3조제1호에서 참전명예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지원 예산규모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아울러 수당액의 변경에 따른 예산확보 및 일할 계산 등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공포일에 대한 부칙의 별도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5조제3항에서 지급시기를 분기 1회에서 매 짹수월로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시행의 문제점등이 설명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됨.

도내 각 시군 참전유공자 지원현황

(2008. 9. 1. 현재)

구 분	조례제정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제한	지급시 기	비 고	향후계획
청주시	-						
충주시	2007.5.31.	1만원	-	있음	매분기	주민생활지원과	
제천시	2008. 1. 4.	2만원	-	있음	매분기	자치운영팀	
청원군	2007.12.5.	3만원	15만원	없음	매분기	주민생활과	
보은군	-						
옥천군	-						
영동군	2008.8.7.	5만원	30만원	없음	매월 5일	주민생활지원과	
증평군	-						
진천군	2008.5.6.	2만원	15만원	있음	매분기	행정과	
괴산군	-						
음성군	2007.11.19.	1만원	-	없음	매분기	주민생활지원과	
단양군	-						

4. 질의 및 답변 요지(답변자 :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 현재 852명을 받았을 경우에 올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되는지?
(성명중 위원)

: 금년도 6월부터 지급을 했는데 총 예산은 1억 2천 정도됨.
- 지금 각 시군에 지원현황을 보면 영동군의 경우 노근리 때문에 5만원 정도 받고 있고 충주 1만원, 제천 2만원, 청원 3만원, 진천 2만원, 음성 1만원지급대상도 청원, 영동, 음성은 지금 제한이 없고 인근 강원도를 봐도 하는데가 많지 않음. 이 조례는 무공수훈자나 상이군경, 고엽제 전우회 등 대상을 포함하고 금액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함. 우리 제천시가 내년에 도민 체전도 있고 후년에 한방엑스포도 있는데 재원확보 차원에서 이것은 한 2년 후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과장님 견해는 어떻것인지? (성명중 위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은 저희 충청북도같은 경우에 청원, 영동, 음성군에서는 포함하여 되어 있음. 타 자치단체에서도 포함해서 하는데가 있고 금액관계사항도 청원군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급기준이 3만원인데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5만원으로 개정을 하고 있음. 저희들은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데 타 시군에는 사망조의금도 지급하고 있음.

5. 소수의견

“없 음”

6. 토론요지

- 조례안 제3조제1호와 관련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2만원으로 수정하고자 함.

7. 심사내용

- 성명증의원의 수정안 발의(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 수정안 표결결과
 - 출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가결(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8.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9. 심사보고 붙임서류

1.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끝.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제1호 “월 3만원의”를 “월 2만원의”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지원사업)(생략)</p> <p>1. <u>월 3만원의</u></p> <p>2. (생략)</p>	<p>제3조(지원사업)(생략)</p> <p>1. <u>월 2만원의</u></p> <p>2. (현행과 같음)</p>